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60
----------	-----

2024. 4. 30.(화)  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  
나. 제출일자 : 2024년 4월 12일  
다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2일  
라. 상정일자 : 제416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
(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)  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김두환)

### 가. 제안이유

- 재정지원 부정수급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취소사유 발생 시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취소 사유 보완(안 제15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- 가. (필요성)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 및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참고 자료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요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

나. (타당성) 예비사회적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걸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바 조례 개정의 목적이 타당하고, 타시도 규정<sup>6)</sup>과 비교하여 판단해 볼 때, 추가로 신설된 지정 취소 요건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6)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,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등

##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거짓 그”를 “거짓이나 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 
“규칙에서 정한 지정요건”을 “지정요건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  
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때
5.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
6.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지정의 취소) 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<u>거짓 그 밖의 부정</u>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</p> <p>2. <u>규칙에서 정한 지정요건</u>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</p> <p>3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15조(지정의 취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거짓이나 그</u> ----- -----</p> <p>2. <u>지정요건</u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</u>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때</p> <p>5. <u>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</u>가 발견되었을 때</p> <p>6. <u>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</u>한 때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사회적기업 육성법

제18조(인증의 취소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2.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
4.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□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### □ 사 유

-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건전 운영을 위하여 지정의 취소사유에 대한 처분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,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사유에 해당함

### □ 작성자

-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